

## 신구조문대비표

### 「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

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환경부령 제833호, 2019. 12. 20., 타법개정]	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환경부령 제834호, 2019. 12. 24., 일부개정]
<p><b>제28조(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) ① (생략)</b></p> <p>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· ④ (생략)</p> <p><b>제38조(석면해체 · 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) ①</b> 석면해체 · 제거업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측정하여야 한다.</p> <p>1. 측정기관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가. (생략)</p> <p>나. 「환경분야 시험 · 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측정대행업자</p> <p>다. (생략)</p> <p>2. · 3. (생략)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<b>제28조(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관리해야 한다.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38조(석면해체 · 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) ①</b> 석면해체 · 제거업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측정해야 한다.</p> <p>1. 측정기관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「환경분야 시험 · 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측정대행업자(석면해체 · 제거업자가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른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를 말한다)</p> <p>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·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41조의3(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) 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①</b> 법 제30조의2제1항제6호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</p> <p>1.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관리 · 감독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가. 석면해체 · 제거작업 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나.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다.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라.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의 보관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2. 석면해체 · 제거작업 중 민원 또는 피해 발생 사항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고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3. 석면해체 · 제거작업 완료 시 작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하여 석면잔재물 잔류여부 확인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</p>	<p><b>제41조의3(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사항) 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</b> 법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</p> <p>1. 상호(명칭)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2. 대표자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4. 소속 감리원</p>

<p>style="color:#ff0000;"&gt; 4. 석면 해체 · 제거작업 감리의 완료 보고<span style="color:#ff0000;"> ② 감리인은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상주하도록 하고, 개인 보호구를 지금하는 등 감리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인,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완료 보고, 제2항에 따른 감리원 상주 및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.</span></p> <p><u>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&lt;신 설&gt;</u></p>	<p><b>제41조의4(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신청 등)</b><span style="color:#ff0000;"> ①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·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1.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2.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가.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나.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3.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가.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나. 장비의 종류와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 · 도지사는 영 제42조제3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(이하 이 조에서 “등록증”이라 한다)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③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·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④ 제3항에 따른</span></p>
---	---

	<p>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 · 도지사는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해야 한다.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⑤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30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자체 없이 제2항에 따 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.</p>
<p>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&lt;신 설&gt;</p>	<p><b>제41조의5(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)</b>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① 법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1.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관리·감독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가. 석면해체·제거작업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나.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다.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라.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의 보관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2. 석면해체·제거작업 중 민원 또는 피해 발생 사항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고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3. 석면해체·제거작업 완료 시 작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하여 석면 잔재물 잔류여부 확인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4. 석면 해체·제거작업 감리의 완료 보고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② 감리인은 법 제30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상주하도록 하고,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감리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,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완료 보고, 제2항에 따른 감리원 상주 및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.</p>
<p><b>제42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)</b> ① 석면 해체작업감리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한다.</p> <p>1. 법 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제30조의2제2 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작업시정 또는 작업중지 요청 불이행의 경우: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</p> <p>2. 법 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제30조의2제2 항제3호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 불이행의 경우: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</p> <p>② (생략)</p>	<p><b>제42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)</b> ① 석면 해체작업감리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한다.</p> <p>1. 법 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제30조의4제2 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작업시정 또는 작업중지 요청 불이행의 경우: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</p> <p>2. 법 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제30조의4제2 항제3호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 불이행의 경우: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43조(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)</b></p>	<p><b>제43조(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)</b></p>

<p>영 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제42조의 석면해체·제거작업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.</p>	<p>영 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제42조의2의 석면해체·제거작업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.</p>
<p>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&lt;신 설&gt;</p>	<p><b>제43조의2(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)</b> 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① 법 제30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·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은 별표 5의2와 같다.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② 환경부장관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별표 5의2에 따라 평가등급을 정하고, 그 결과를 해당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④ 환경부장관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.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·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/p>
<p>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&lt;신 설&gt;</p>	<p><b>제43조의3(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)</b> 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” 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미흡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
<p><b>제44조(석면환경센터의 지정)</b>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”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4. (생략)</li> <li>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5. 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</li> <li>6. ~ 7. (생략)</li> </ol>	<p><b>제44조(석면환경센터의 지정)</b>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”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4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&lt;span style="color:#ff0000;"&gt;&lt;삭 제&gt;</li> <li>6. ~ 7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